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여행업 등록 신청, 변경 및 지위승계 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을 위한 장치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발급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보유자
가 부족한 어권에 신속하게 자격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역량있
는 자격자 배출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의 합격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행업 등록 및 변경신청자, 지위 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한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2조제1항제2의2, 제16조제2항제1의2, 제16
조제3항 개정 및 안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여행업 보증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에서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개정)

다. 여행업 관할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여행업체에 대해 갱신안내를 하도록 근거규정과 필요한 서
식을 마련함(안 제18조제9항 신설 및 안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라.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의 시험과목 중에서 국사를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고, 국사를 제외한 시험과목의

배점비율을 조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14 개정)

마.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언어와 동일하게 개정함(안 별표 15 개정)

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자격의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 고자 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과목을 신설함(안 별표 16의1의바 신설)
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서식을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자격증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개정 및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별도 실시 예정(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2 중 “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2”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여행업의 경우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행업의 경우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제16조제2항제1호의2 중 “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에 ‘여행업의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가 내국인인 경우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추가한다.

제18조제1항 중 “여행알선”을 “여행계약의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 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 서식의 갱신

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나. (생략) 2.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u>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u>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u>, 여행업의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포함)가 내국인인 경우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u>범죄경력회보서</u>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u>여행알선과</u>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 ----- ----- 여행계약의 이행----- ----- ----- ----- -----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회의)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신설>	----- ----- ----- ----- -----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여행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여행업자에게 별지 제47호 서식의 갱신기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관광통역안내사·호텔경영사·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면접시험으로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 ----- ----- -----필기시험(한국사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제외한 필기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사시험(관광통역안내사 및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외국어시험-----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46조의2(한국사시험) 관광통역안
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는 국사편
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
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이때의 급수는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급수여야
한다.

별표 1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제46조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 비율
가. 관	국 사	40%
광통역	관광자원해설	20%
안내사	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 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 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광학개론	20%

별표 1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4]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및 합격결정 기준

(제46조 관련)

1.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배점 비율
가. 관	<삭제>	<삭제>
광통역	관광자원해설	40%
안내사	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 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 에 관한 법률」 등의 관광 관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광학개론	30%

	계	100%
나. 국	국 사	<u>30%</u>
내여행	관광자원해설	<u>20%</u>
안내사	관광법규	<u>20%</u>
	관광학개론	<u>30%</u>
	계	100%
다.~		
마.	(생 략)	

	계	100%
나. 국	<삭제>	<u><삭제></u>
내여행	관광자원해설	<u>30%</u>
안내사	관광법규	<u>30%</u>
	관광학개론	<u>40%</u>
	계	100%
다.~		
마.	(현 행 과 같 음)	

별표 1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생 략)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
는 급수

자격구분		관광통역 안내사	(생략)
시험명			
영어~	(생략)	(생략)	(생략)
이탈리아어	(생략)	(생략)	(생략)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u>600점</u> 이상	(생략)

별표 15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5]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현행과 같음)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
는 급수

자격구분		관광통역 안내사	(현행과 같음)
시험명			
영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탈리아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u>776점</u> 이상	(현행과 같음)

별표 1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1.10.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면 제 대 상 및 면 제 과 목
1. 관광통역안내사	가. ~ 마. (생략) (신설)

별표 16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면 제 대 상 및 면 제 과 목
1. 관광통역안내사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3년인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 자 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

2.~5. (생략)		

별지 제1호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8.>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아형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업 및 한국체점
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귀하

특정자사항·
특별자치도시·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국체점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국박사업이 있는 경우 해 상당 700원을 가산 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처분 공동요청 동의서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아형장업 신청인만 해당함-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치리기관

→

처리기관

→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구

210mm×297mm(백장지 85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이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

				의 관광안내업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에는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을 면제(한시자격자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8.>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
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아형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업 및 한국체점
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귀하

특정자사항·
특별자치도시·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국체점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국박사업이 있는 경우 해 상당 700원을 가산 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처분 공동요청 동의서
(호텔업,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아형장업 신청인만 해당함-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치리기관

→

처리기관

→

등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장·군·구

210mm×297mm(백장지 85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아형장업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호 포함함이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이다)

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1. 사업계획서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이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단지모임업의 경우로서 가 부동산에 해당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모호보증가입 증명 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한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함이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아형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아형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인장(아형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시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시감정서(아형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아형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류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여행업 및 국제회의의 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을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1. 사업계획서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이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 휴양단지모임업의 경우로서 가 부동산에 해당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모호보증가입 증명 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함이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아형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아형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인장(아형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시기관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시감정서(아형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아형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류체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여행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함이다)

- 12 -

- 13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고객센터	회사소개	채용정보	제휴사	문의사항
<신 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우에만 해당합니다)						
4. 역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전검사증명서(아형장입 등록의 경 우에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호 석씨는 여동생 김은을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 칭) 주사업 장 소재 지 등록번 호		
		전화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 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국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외국국민 등록·도시번호변경의 경우 : 15,000원 ○ 15,000원의 관공서장의 경우 : 5,000원 (숙박시설증, 객실 등록증등의 경우는 관공서 상당 600원 이하의 금액에 속함)
당당 공무	1. 전기안전관리원서(영업소설) 조서 2부 및 전기안전관리원서(영업소설) 증명서 2부 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등은 국제화폐결제시설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인 해당함.	
영 확인서	2. 액세서리우스 사용자생활환경주정서(이영장 시설 설치 조서) 2부 + 액세서리우스의 안전관리 회사서명 3. 액세서리우스 사용자생활환경주정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이영장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인 해당함.	
	<신 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민 제 회 의 사 안	2.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부 제 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범죄경력조회서(아첨 없음만 해당합니다)
공 무 원 화 사 장	관 외 관 내 중 개 이 사 연 회 의 사 안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지전권점검확인서(호통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역학식유가스 사용자실황점검사증명서(야행장업 특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작성인 어등은 같은 신청인이 독자 유한이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	전화번호
장 소재지	
등록본호	등록연월일
업종	
변경등록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원인 제출서류	변신서류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입국 증명 원 확인서	1. 전기안전점검원서(영업소 및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 / 전기사업법, 제6조2제4항 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업체 주소 국제화도사업 변경통보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함(다) 2. 화재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화물구역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 4항'에 따라 화물구역 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서 야 영장된 변경통보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함(다)	○ 외국국민권증 도시민박업 증 : 15,000원 ○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증 : 15,000원(국외출생 증 갱신 실적증명서 는 증명 및 실명 600원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 다.)
	3. 신원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및 원외인) 내국국민 권증 법 제121조의제에 해당하 지 아니한 경우를 증명하는 범죄경력기록서(여 기)를 증명하는 범죄경력기록서(여	

행정정보 공개의 투명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graph LR
    A[신청서 작성] --> B[접수]
    B --> C[검토]
    C --> D[결정]
    D --> E[통지종발급]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별지 제23호서식

- | <div> <div>■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시] <개정 2019. 4. 25.></div> <div> <div>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div> <div> <div>※ 작성에 어두운 관련 사항만이 적혀 있습니다.</div> </div> </div> </div>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 | | <div>지리</div> <div> <div>○ 국내여행업: 2일</div> <div>○ 국내·외여행업 - 관광숙박업, 관광이동사업업 - 국제회의업, 유물사업, 관광편의의 사업업: 5일</div> <div>○ 카지노업: 7일</div> </div> |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귀환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귀환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시야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한
다.

신교인	왕도인(피랍병인)	(4명 중 2명)
	왕수인(합병인)	(4명 중 2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관광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원칙 합의서(행정기관은 협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벌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	---	-----	---------

치 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도	→	수 리	→	종 결 (통지발령)
신청인		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 부 관광청 관광지 지시· 지령지 지도· 지시·경 구 조 지정 관광관리 회)		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 부 관광청 관광지 지시·지령 지도·지 시·경 구 조 지정 관광관리 회)		치 리 기 관 (문화체육 관광청 관광지 지시·지령 지도·지 시·경 구 조 지정 관광관리 회)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경우에는 신장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장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처 리 기
관
(독별자
지시·독
별자지도
·
시·군·
구)

신장인

처 리 기
관
(독별자지
시·독별
자지도
·
시·군·구)

처 리 기
관
(독별자지
시·독별
자지도
·
시·군·
구)

처 리 기
관
(독별자
지시·독
별자지도
·
시·군·
구)

별지 제23호 서식

-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 |
|-----------------------------|------|---|
| ※ 객실의 여주인은 환로 신청인이 되지 않습니다.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자 |
| | | 처리
기간 |
| | | ○ <상 계>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유람선사업업·관광편의
시설업 : 5일
○ 카지노업 : 7일 |

양도인 (피탈병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수인 (흡병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양도인(파탈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여의인	1.4	1.4	1.4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함
다.

신고인	왕도인(피합병인)	(사형 또는 만)
	왕수인(합병인)	(사형 또는 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서 포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여유분 산정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의 의견 양자처리의 관련여의 담당 공무원의 「자치징정방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처
의 공동의결을 통하여 뒤쪽의 신장처리를 담당 하는 제2조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도	→	수 리	→	등록·후 · 신고 · 발급
신청인		처리 기 관 (공공체 물관청 국립공 관 특별자치 지치· 지치· 지치· 사·도 지· 사·군 자치도 자치도		처리 기 관 (공공체 물관청 국립공 관 특별자치 지치· 지치· 지치· 사·도 지· 사·군 자치도 자치도		처리 기 관 (공공체 물관청 국립공 관 특별자치 지치· 지치· 지치· 사·도 지· 사·군 자치도 자치도		등록·후 · 신고 · 발급

		기준 판형 용		관공 판 형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처분대 대상업종 확인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처분대 대상업종 확인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처분대 대상업종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공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받은 사유		처분받은 사유		처분받은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처분발발	관공진흥법령 위반내용		처분발발					
		진행 중인 내용		처분발발					
	진행 중인 내용		진행 중인 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칸을 보란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된 때에는 「관공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된 때에는 「관공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발생된 때에는 「관공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니다.					
신상인 (대표 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공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장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에서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주(세출법인)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함)의 결과서류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음이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인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거나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상인수 명세를 포함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상인 (대표 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공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장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에서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주(세출법인)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함)의 결과서류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음이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인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거나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상인수 명세를 포함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상인 (대표 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공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장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에서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주(세출법인)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함)의 결과서류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음이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인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거나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상인수 명세를 포함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상인 (대표 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공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장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에서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주(세출법인)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함)의 결과서류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음이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인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거나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상인수 명세를 포함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상인 (대표 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함)에 해당하는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공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장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에서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주(세출법인)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공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함)의 결과서류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음이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인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상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거나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상인수 명세를 포함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5서식] <신설 2016. 3. 29.>

(앞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사진
2.5cm×3cm

자격증번호 :
 LICENSE NO :
 자격구분 :
 QUAL :
 성명 :
 NAME :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PRESIDENT OF KTO

인

86mm×54mm(PVC(비닐)) 980.4g/m²

(뒤면)

주의사항

1. 이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

86mm×54mm(PVC(비닐)) 980.4g/m²

별지 제39호의 5-1서식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5서식]

(앞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TOUR GUIDE CERTIFICATE

사진
2.5cm×3cm

자격증번호 :
 LICENSE NO :
 자격구분 :
 QUAL :
 성명 :
 NAME :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PRESIDENT OF KTO

인

86mm×54mm(PVC(비닐)) 980.4g/m²

(뒤면)

주의사항

성명 :
 NAME :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1. 이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

86mm×54mm(PVC(비닐)) 980.4g/m²

별지 제39호의 5-1서식
(신설)

(앞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TOUR GUIDE CERTIFICATE

사진
2.5cm×3cm

자격증번호 :
 LICENSE NO :
 자격구분 :
 QUAL :
 성명 :
 NAME :
 유효기간 :
 VALID UNTIL :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PRESIDENT OF KTO

인

86mm×54mm(PVC(비닐)) 980.4g/m²

(뒤면)

주의사항

성명 :
 NAME :
 생년월일 :
 DATE OF BIRTH :

1. 이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

86mm×54mm(PVC(비닐)) 980.4g/m²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텡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지텔프(G-TELP, 레벨2)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아이엘츠(IELTS)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	한국지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관행회(日本國書刊行會)에서 공동 개발하여 한국지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일본어능력시험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시행하는 일

	(JLPT)	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실용중국어시험(BCT)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中國國家漢語國際推廣領導小組辦公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중국어언어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지사중국어사에서 시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중화민국 교육부 산하 국가화어측험추동공작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프랑스어	플렉스(FLEX)
프랑스어	델프/달프(DELF/DALF)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Diplôme d'Etudes en Langue Française)을 말한다.	
독일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에서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스페인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텔레(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러시아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토르플(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이탈리아어	칠스(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에서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첼리(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플렉스(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어	토플 (TOEFL, PBT)	584점 이상	396점 이상	557점 이상	619점 이상	677점	
	토플 (TOEFL, 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토익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텡스 (TEP S)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72점 이상	201점 이상	367점 이상	404점 이상	600점
	지텔프 (G-TELP, 레벨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플렉스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아이엘츠	5점	4점	5점	5점	9점	

	(IELTS)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692점 이상	784점 이상	990점
	일본어검정시험(日檢, 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701점 이상	795점 이상	1000점
	플렉스(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이상				N1
중국어	한어수평고시(HSK)	5급 이상	4급 이상	5급 이상	5급 이상	6급
	플렉스(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실용 중국어 시험 (BCT)	(B)	181점 이상			300점
		(B)L&R	601점 이상			1000점
	중국어실용능력시험(CPT)	750점 이상				1000점
	대만중국어능력시험(TOCFL)	5급(유리) 이상				6급(정통)
프랑스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1000점
	델프/달프(DELF/DALF)	델프(DELF) B2 이상				달프(DALF) C2
독일어	플렉스(FLEX)	776점 이상				1000점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Zertifikat)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Zertifikat) B1(ZD)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Zertifikat) C2

		이상				
스페인어	플렉스 (FLEX)	776점 이상				1000점
	텔레(DELE)	B2 이상				C2
러시아어	플렉스 (FLEX)	776점 이상				1000점
	토르플 (TORFL)	1단계 이상				4단계
이탈리아어	칠스(CILS)	레벨 2-B2 (Livello Due-B2) 이상				레벨 4-C2 (Livello Quattro-C2)
	첼리(CELI)	첼리(CELI) 3 이상				첼리(CELI) 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플렉스 (FLEX)	776점 이상				1000점

3.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을 구분 시험명		호텔 서비스사	호텔 관리자	호텔경영사
영어	토플(TOEFL, PBT)	264점 이상	371점 이상	412점 이상
	토플(TOEFL, IBT)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토익(TOEIC)	245점 이상	350점 이상	400점 이상
	텡스 (TEPS)	'18. 5. 12. 이전 시험	191점 이상	335점 이상
		'18. 5.	121점 이상	221점 이상

	12. 이후 시험			
	지텔프(G-TEL P, 레벨2) 플렉스(FLE X)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229점 이상	402점 이상	437점 이상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 (JPT)	255점 이상	346점 이상	392점 이상
	일본어검정시험 (日檢,NIKKEN) 한어수평고시	250점 이상	351점 이상	398점 이상
중국어	(HSK)	3급 이상	4급 이상	4급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 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 시험의 기준 점수(이하 "합격 기준 점수"라 한다)는 해당 외국어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지텔프 시험은 나머지 부분의 평균 점수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토플(TOEFL, IBT) 시험은 듣기부분을 포함한 합계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면 제 대 상 및 면 제 과 목
1. 관광통역안내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2) 관광안내실무: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3년 이내로 한다)과 사용외국어를 정하여 고시하는 한시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관광안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을 면제(한시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여행안내사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5. 호텔서비스사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接客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 체류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 험업의 경우: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야영장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 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		처리기관 (특별자치 지도·시·군·구)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 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여행업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8호 또는 제9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9.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10.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점검확인증(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1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먹는물 수질검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야영장에서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4.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한옥체류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여행업 및 국제회의 기획 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범죄경력조회서(여행업에만 해당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검사증명서(야영장업 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 · 군수 · 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아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아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여행업에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 시설업: 5일 ○ 카지노업: 7일
양도인 (피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양수인 (합병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등록번호			
업종			
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년	월	일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제출서류	뒤쪽 참조(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포함)	수수료 20,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등록·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시·군·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여행업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관광진흥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5서식]

(앞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TOUR GUIDE CERTIFICATE	
사진 2.5cm×3cm	자 격 증 번 호 : LICENSE NO.
	자 격 구 분 : Q U A L.
	성 명 : N A M E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PRESIDENT OF KTO 인	

86mm×54mm(PVC(비닐) 980.4g/m²)

(뒤쪽)

성 명 : N A M E	생 년 월 일 : DATE OF BIRTH
◎ 주 의 사 항 ◎	
1. 이 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 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	

86mm×54mm(PVC(비닐) 980.4g/m²)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카지노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을 포함합니다)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가 내국인인 경우 법 제11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여행업에만 해당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TOUR GUIDE CERTIFICATE

사진
 2.5cm×3cm

자격증번호 :
 LICENSE NO.
 자격구분 :
 QUAL.
 성명 :
 NAME
 유효기간 :
 VALID UNTIL

년 월 일

한국관광공사 사장
 PRESIDENT OF KTO

인

86mm×54mm(PVC비닐) 980.4g/㎡

(뒤쪽)

성명 : _____
 NAME : _____
 생년월일 : _____
 DATE OF BIRTH : _____

◎ 주 의 사 항 ◎

- 이 중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기타 관광진흥법령 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한국관광공사에 이 중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중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한국관광공사 우)26464

여행업 보증보험 등 갱신 안내서			
① 등 록 번 호		② 업 종	
③ 상 호(명 칭)			
④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 표 자 성 명)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⑥ (현)보 증 보 험 등 가 입 기 간			
귀 업체의 보증보험등 가입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증보험등 기간 만료 전에 가입을 갱신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연 락 처	(044) 203 - 2842